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가단5136414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주식회사 삼창선재

변론 종결 2015. 2. 3.

판결 선고 2015. 3. 2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586,270원 및 그 중 11,435,023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창선재와 피고 A 사이에 2014. 1. 28.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삼창선재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6435호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29.부터 2014.7.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1. 30.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4. 3. 28. 대출원금 11,250,000원 및 이자 185,023원 합계11,435,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될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5.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의1/2 지분 소유권자인 B는 2007. 12. 14. C과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1122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라고 한다)를 하여주었다.

마. C은 B에 대한 확정채권 50,000,000원을 2011. 6. 13. 피고 A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14. 접수 제42172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은 2014. 1. 28. 채무초과상태에서 C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50,000,000원의확정채권을 다시 피고 삼창선재에게 양도(이하에서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 이라고 한다)하고, 위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6435호로 2014. 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피고 삼창선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11,586,270원 및 그 중 11,435,023원에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삼창선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권계약일로부터 불과 2일이 경과한 2014. 1. 30.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3. 28. 원고가 대출원리금 11,435,02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삼창선재와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삼창선재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함에 따라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 사 및 수익자인 피고 삼창선재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삼창선재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삼창선재는 피고 A에게 49,133,940원의 채권이 있어 채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삼창선재의 위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삼창선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파주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6435호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

부동산 목록

1. 파주시 D 임야 125㎡
2. 파주시 E 임야 2,773㎡ 끝.